

제재내용 공시

1. 조합명 : 제1,2구잡수기수협

2. 제재조치(요구)일 : 2022. 10. 11

3. 제재조치(요구)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 직원	징계면직 : 1명, 감봉 : 2명, 견책 : 2명, 경고 : 6명

※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재심)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

4. 제재대상사실

○ 예탁금 자동대출 부당 취급 및 횡령 등

- 2급 윤○○은 예탁금자동대출 가능한도가 2천만원이고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 잔액의 100% 범위 내임을 알고 있었으나 담보대출 실행 후 추가납입으로 대출한도를 증액시킨 다음 입금내역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총 326,400천원을 횡령함.

○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예방 소홀

- 1급 정○○ 외 9명은 ○○○은 영업점장 필수점검 자료 확인 부적정, 책임자 승인거래 부적정, 단말기 조작자 ID관리 부적정 등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여,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함.

○ 사고(횡령) 보고 지연 및 허위보고 등 업무처리 부적정

- 주례지점 2급 이○○는 채권서류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사고자 관련 채권서류 4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당일 사고자와의 통화 등으로 대출금이 횡령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즉시 소속장 1급 정재영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1급 정○○ 외 1명은 조합 상임이사 및 조합장에게 지연 및 허위보고 하는 등 보고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 신용사업 관리·감독업무 소홀

- 상임이사 양○○은 직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업무점검, 특히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의 내부통제 철저를 당부한 수차례의 지도공문에 의거 내부통제와 결과보고 및 상호금융 영업점에 지도 문서발송은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내부통제 및 관리 감독을 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 등 횡령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였으며, 신용사업 관리자로서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

< 관련법규 >

1.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장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3. 제1.2구잠수기수협 「정관」 제2조(목적) 제51조(임원의 직무), 「직제규약」 제10조(임원의 직무)
4. 「복무규정」 제3조(법규의 준수), 제4조(성실과 공정), 제18조(사고보고)
5. 「회원조합 사고보고 요령」 제3조(사고보고 대상 및 범위), 제4조(보고의 종류), 제5조(보고방법)
6.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1장 제27조(여신거래 입출 명세 확인), 제5편 제18장(예탁금자동대출)
7. 「상호금융 예탁금업무방법」 제1편 제24조(무통장입금(타행환 포함)), 제42조(직원의 금지사항), 제46조(통장·인감 등 임의보관 제한), 제142조(목적), 제143조(사용대상거래), 제147조(점검기준), 제148조(필수점검자료)
8. 「상호금융 내국환업무방법」 제5장 제47조(타행환송금자금의 청구반환처리)
9. 「회원조합 내부통제요령」 제17조(영업점장 필수점검의 실시)
10. 「전산정보업무준칙」 제24조(사용자 관리)

1. 조합명 : 제1,2구잠수기수협

2. 제재조치(요구)일 : 2022. 10. 11

3. 제재조치(요구)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 직원	경고 : 12명

※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재심)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

4. 제재대상사실

○ 금고관리 등 내부통제 업무 소홀

1급 김○○ 외 9명은 금고 관리자 지정, 금고열쇠 및 금고암호 관리 등 금고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매월 2회 실시하여야 하는 사고예방교육도 실제로 실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한 것처럼 실시결과를 전산에 등록하는 등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금고관리 자체점검 업무 소홀

2020. 12. 21. 조합감사실에서 시재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금융 영업점 금고관리 자체 점검을 하라고 「상호금융 영업점 금고관리 자체점검 안내」 문서를 시행하였고, 조합은 2021. 1. 5. 「상호금융 영업점 금고관리 자체점검 결과보고」에서 금고암호를 변경한지 1년 경과하여 2021. 1월 중 조치 예정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금고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상임이사 양○○ 외 1명은 상호금융 영업점에 대한 금고관리 자체점검을 하라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 실제로 점검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업무처리함.

< 관련법규 >

1. 「회원조합 내부통제 요령」 제8조(감사통할책임자의 책무), 제31조(교육)
2. 「상호금융 출납업무방법」 제6조(금고관리자 지정 및 금고 암호·열쇠 관리), 제7조(금고암호의 제정 및 변경), 제8조(예비열쇠)
3. 「상호금융 예탁금업무방법」 제1편 제4장(예탁금의 관리) 제2절(예탁금 잔액대사)

1. 조합명 : 제1,2구잠수기수협

2. 제재조치(요구)일 : 2022. 10. 11

3. 제재조치(요구)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 직원	경고 : 3명

※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재심)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

4. 제재대상사실

○ 기업운전자금대출 취급 부적정

1급 김○○ 외 2명은 2021.03.08. 차주 윤○○(○○에스SOAP)에 기업운전자금대출 724백만원 취급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구입일 : 2019.11.20. 구입가 : 530백만원)를 구입할 때 받은 주택구입자금대출(취급기관 : (주)○○대부)을 상환하는 용도로 처리하여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한 기업운전자금 자금용도 심사 및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사전심사를 하지 않아 취급 당시 위규 처리함.

< 관련법규 >

1.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1장 제5조(대출금의 용도)
2.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제3편 제4장 제5절(개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사전심사) 제61조(사업계획서 제출), 제62조(대출금액별 심사기준)

1. 조합명 : 제1,2구잠수기수협

2. 제재조치(요구)일 : 2022. 10. 11

3. 제재조치(요구)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 직원	경고 : 4명

※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재심)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

4. 제재대상사실

○ 담보 취득 부적정

1급 정○○ 외 3명은 나대지를 담보로 기업시설자금대출 70,000천원(2건, 각 35,000천원) 취급 시 지상에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여 담보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담보 취득함.

< 관련법규 >

1.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161조(담보취득원칙), 제169조 제2항(담보취득제한)